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수상레저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2.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윈드서핑·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재개업하는 경우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수수료 2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적합성 검토	→	결 제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	---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